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3.3.23 ~ 5.2, 40일간)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으로 2023.5.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재입법예고문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18부), 중앙행정기관(18청), 중앙행정기관(2원), 중앙행정기관(5처), 중앙행정기관(7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 산하기관(농병), 소속기관(농을), 시도 방역부서, 관련협회

주무관 박해성 사무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전결 2023. 3. 22. 이동식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2115 (2023. 3. 22.)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0 팩스번호 044-868-0628 / phsk@korea.kr / 대국민 공개